

0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
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
소상공인 육성, 전통시장·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
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

* 설립근거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 제1항

공단 주요 지원사업

소상공인 전용 정책자금

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
운용·관리 및 융자지원



전통시장 활성화

전통시장별 특색에 맞는
시설 및 경영지원



소상공인 생애주기 지원

소상공인의 창업→성장→재기
생애주기에 맞춘 단계별 지원



정보 제공

소상공인·전통시장 창업
및 경영정보 제공



디지털 전환

소상공인, 전통시장의
스마트화 및 온라인 진출 지원



조사연구 정책개발

소상공인·전통시장
현황조사 및 정책연구



✓ 공단 주요 지원시책

1

소상공인 정책자금

- 01. 소상공인정책자금(직접대출)
- 02. 소상공인정책자금(대리대출)

2

소상공인 창업지원

- 01. 상권정보시스템
- 02.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
- 03. 신사업창업사관학교
- 04.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제도

3

소상공인 성장지원

- 01. 소상공인 언-컨택트 교육
- 02. 소상공인 컨설팅
- 03.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
- 04.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보급사업
- 05.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
- 06.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사업
- 07.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
- 08.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(제로페이)
- 09.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
- 10.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
- 11.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

4

소상공인 재기지원

- 01. 희망리턴패키지
- 02.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
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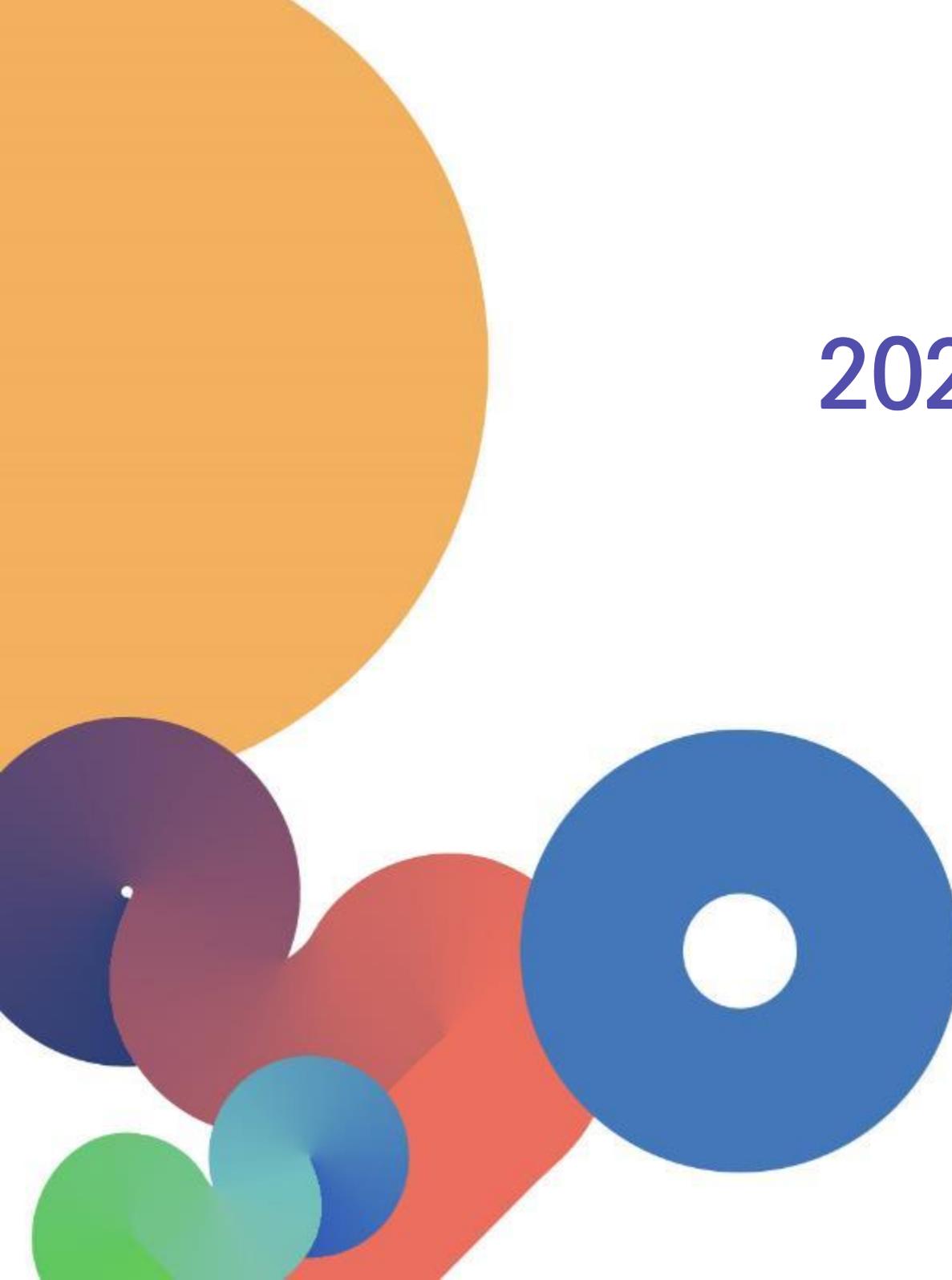
소상공인 특화지원

- 01. 소상공인 판로개척지원
- 02. 스마트공방 기술보급
- 03. 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
- 04. 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
- 05. 복합지원센터 구축·운영

6

전통시장 활성화 지원

- 01. 주차환경개선사업
- 02.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
- 03. 문화관광형시장
- 04.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
- 05. 디지털전통시장
- 06. 청년몰 조성
- 07.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
- 08. 청년상인 도약지원
- 09. 전통시장 화재공제
- 10.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
- 11.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
- 12. 상권르네상스
- 13.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사업
- 14. 온누리상품권 발행



02

2023년 희망리턴패키지

01

희망리턴패키지

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
폐업위기 극복과 신속·안전한 사업정리 후
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
안정적 재기지원



경영위기 및 폐업(예정) 소상공인

지원대상

지원분야

경영개선지원	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경영진단 후 경영개선교육 또는 경영개선사업화(심화교육+컨설팅+자금(최대 2천만원))
원스톱폐업지원	<p>사업정리컨설팅·점포철거지원·법률자문·채무조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재도전 여건 마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정리컨설팅 : 재기전략, 세무, 부동산, 직무·직능, 심리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폐업 및 재기경로 제공 - 점포철거지원 :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(최대 250만원) - 법률 자문 :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법 등에 관한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상담지원 - 채무조정 : 사업관련 채무에 관한 채무조정 상담을 통한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
재취업지원	<p>취업교육, 전직장려수당을 통한 재취업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업교육 : (기초) 직무탐색, 이력서작성 등 (심화) 취업마인드 함양, 1:1상담 등 (특화) 취업기업별 맞춤형 교육 및 채용 연계 - 전직장려수당 :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에게 지원(최대 100만원)
재창업지원	재창업 의지와 성공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교육, 재창업사업화(심화교육+컨설팅+자금(최대 2천만원))





03

2023년 경영개선 지원사업

01

경영개선 지원사업개요



신청자격

경영위기 소상공인



-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
- 경영위기 판별기준
 - ① (매출액) 전년대비 20%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지속적 감소 중인 소상공인
 - ② (저신용자)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(CB) 5등급 미만인 소상공인
 - ③ (지정지역) 최근 3년 이내,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, 고용위기지역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,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
 - ④ (기타)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큰 소상공인 ('19년 대비 20%이상)

지원규모

총 7,400건 내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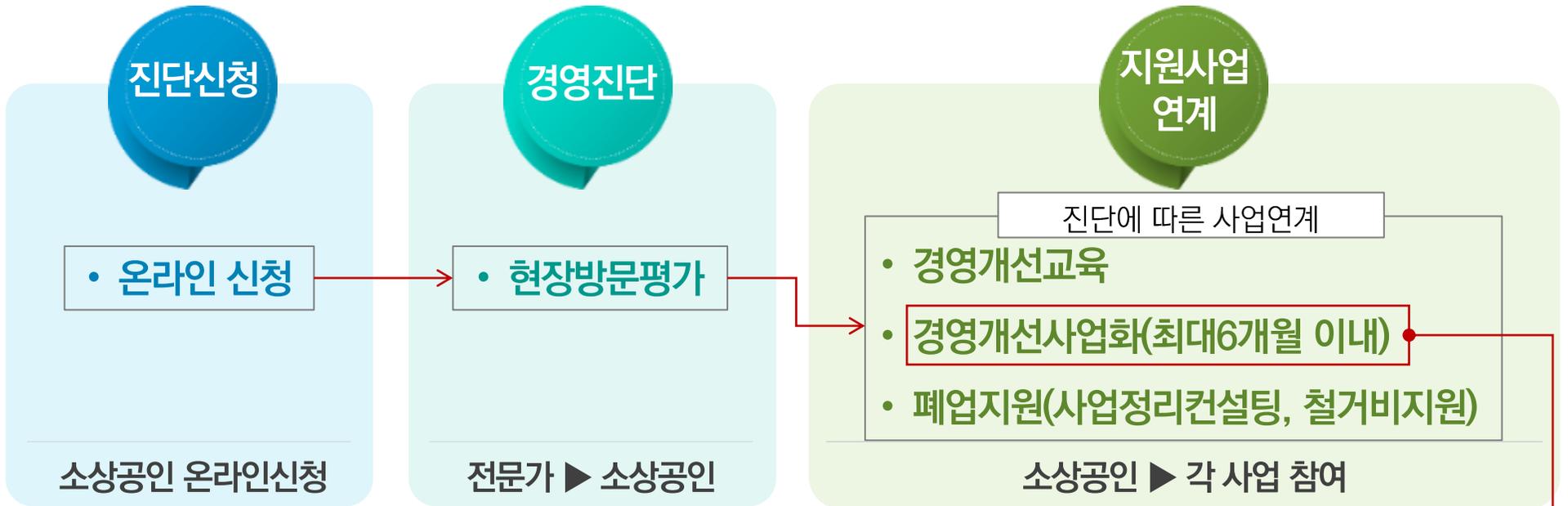


02

경영개선 지원사업과정



경영진단 통한 경영개선교육 또는 사업화(최대 2천만원) 지원



#경영개선사업화 : 심화교육(필요시) → 이행전략도출 및 컨설팅 → 사업화자금(최대 2천만원)

03

경영개선 지원사업내용

- ① 경영진단
- ② 경영개선교육
- ③ 사업화



① 경영진단

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솔루션 제공 및 지원사업(교육, 사업화, 폐업지원) 연계

② 경영개선교육

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, 소비트랜드, 상권분석, 재무, 기술 등 경영교육 실시(총 30H 내외)

③ 사업화

경영개선을 위한 '심화교육 → 이행전략도출 및 실행 → 사업화' 전과정에 따라, 최대 2천만원(자부담 포함 최대 4천만원 중 국비 50%) 사업화 자금지원

[총 사업비 구성]

정부지원금	소상공인 대응 사업비	
	현금	현물
총 사업비의 50% 이하 (예시) 2,000만원	총 사업비의 15% 이상 600만원	총 사업비의 35% 이하 1,400만원

*현물은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

04

경영개선 지원사업신청

신청방법

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(<http://hope.sbiz.or.kr>) 신청·접수



신청기간

2023년 3월 중 소상공인 모집공고 예정



05

경영개선 지원사업체계

역할

경영위기 소상공인 '경영진단+교육+사업화(경영개선,정산 등)' 지원



구분	역할	비고
전담기관 (소진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프로그램 총괄 관리 사업계획 수립·조정, 사업공고 등 사업비 관리 시스템 운용, 전문가그룹 Pool 확보 및 관리 	
주관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영위기 소상공인 모집 및 발굴, 선발 자금지급 신청내역 검토 및 지급 등 진단전문가, 사업화멘토 매칭 및 비용지급 사업지원 참여 소상공인 선발, 관리 	
경영진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영위기 사업장 방문 및 진단 개선솔루션 도출 및 연계사업 판정 	* 주관기관에서 자체 조달(공단 승인 필요)
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영개선교육(30H) 커리큘럼 수립 및 운영 사업화교육(10H) 커리큘럼 수립 및 운영 	* 교육의 경우 위탁 가능하나, 경영진단에 따른 교육진행·수료 및 경영반영 등 성과관리
멘토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전담멘토) 피보팅 이행전략 수립·관리, e나라도움 등 행정처리 도움 (선배멘토) 성공 노하우 전수, 선배기업 경영체험 등 멘토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사업화 멘토와 경영진단 컨설턴트 중복불가 * 멘토 Pool은 공단 제공

06

경영개선 주관기관



주관기관 선발

체계적인 진단전문성을 갖추고 교육, 전문가 그룹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및 기관을 권역별 선발(15곳)



권역별 배분

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 분포를 근거로, 권역별 지원목표 및 주관기관 수를 배분하여 **균등·밀착지원**



* 권역별 적격한 주관기관이 없거나 선정된 주관기관의 수용역량이 지원목표보다 부족한 경우, 지원목표 재조정

주관기관 관리

PM 1인, 전담인력 2인 총 3인 이상 구성



'23년 변경사항

구분	2022년	2023년
사업화교육	32H	<u>10H(e나라도움 등 3H는 공단제공)</u>
사업화멘토링	12회	4회
수행역할	경영개선 사업화	<u>경영진단 + 개선교육 + 사업화(교육, 멘토링 등)</u>
기관운영	컨소시엄 불가	기능별 위탁 가능
협약기간	재협약 불가	우수기관 차년도 재협약 가능

06

경영개선 주관기관

주관기관 자격

경영진단 및 자문, 경영관리가 가능한 공공, 민간 협회·단체이며, 관련 실적 및 교육·사무공간 등 보유한 곳 (공고 시 세부내용 확정)

주관기관 성격

- 간접보조사업자
- 업무편람 준용, 필요시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 등 조치
- 보조금관리법, 국가계약법, 청탁금지법 등 준용
- 이윤창출 불가,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유의
- e나라도움 사용을 통한 보조금 흐름 상시 모니터링



사업비 편성(안)

(예) 600명 지원(경영진단 300명 + 교육 200명 + 사업화 100명) // 총 사업비 8.4억 이내

사업구분			편성기준(안)
	경영 진단		진단 수당
선택 (택1)	경영개선교육	교육(30H)	강사비, 교육장임차료, 교재비, 다과 및 식대 등
		멘토링	멘토링 수당
	경영개선사업화	교육(10H)	강사비, 교육장임차료, 교재비, 다과 및 식대 등
		기타	선정평가(평가수당, 평가장 임차료, 다과 및 식대 등)
인건·기타운영비			총 사업비의 30% 이내 * 인건비(PM1명, 2명 전담 100% 필수), 홍보비 등

#소상공인 교부금 최대 2,000만원



04

2023년 재창업 지원사업

01

재창업 지원사업 개요

신청자격

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 높은 폐업(예정) 소상공인



-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
-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이 '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
- 폐업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, 신규 창업분야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
- 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
-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
 - 사업완료 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

지원규모

총 5,500건 내외



02

재창업 지원사업분야

- 1.재창업교육
- 2.재창업사업화
 - 2-1.자율프로그램
 - 2-2.멘토링
 - 2-3.사업화자금



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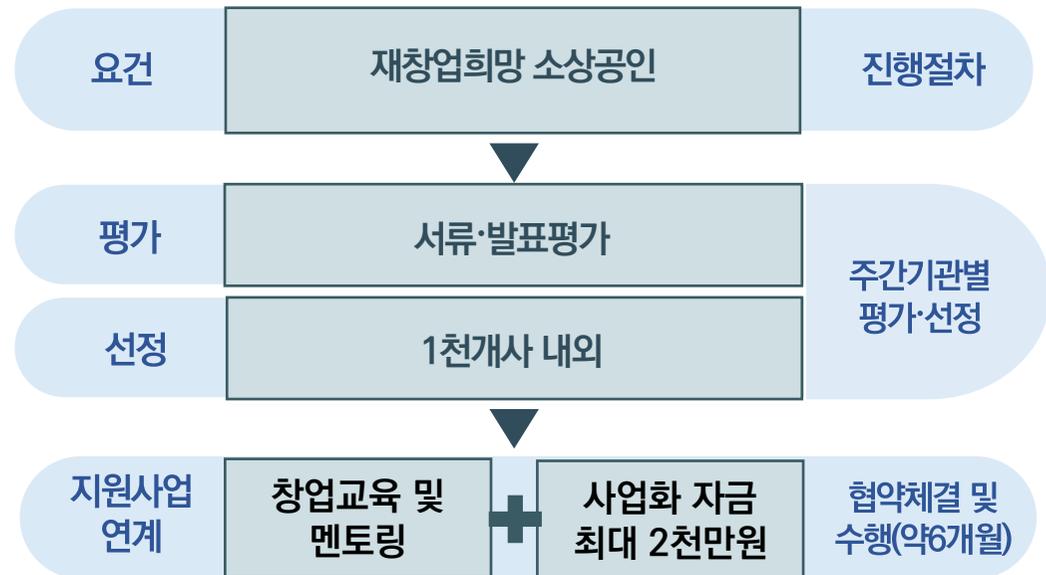
재창업교육, 재창업사업화(교육+멘토링+자금(최대 2천만원)) 지원

1.재창업교육

유망·비과밀 업종 중심의 이론·실습교육(50H)



2.재창업사업화



*e커머스 등 특화업종을 인큐베이팅 형태로 지원하며 별도공고 예정(2월)

02

재창업 지원사업분야

- 1.재창업교육
- 2.재창업사업화
 - 2-1.자율프로그램
 - 2-2.멘토링
 - 2-3.사업화자금



2-1.자율프로그램

폐업원인분석, 재창업 업종·분야 유망기업 업계현황·트렌드 등 심화교육, 네트워킹 등

2-2.멘토링

재창업 계획 수립, 아이템 개발 및 고도화, 매장모델링, 홍보·마케팅 전략 등 사업화 쏠과정의 멘토링

2-3.사업화자금

최대 2천만원 국비지원(자부담 포함 최대 4천만원 중 국비 50%)

[총 사업비 구성]

정부지원금	소상공인 대응 사업비	
	현금	현물
총 사업비의 50% 이하 (예시) 2,000만원	총 사업비의 15% 이상 600만원	총 사업비의 35% 이하 1,400만원

*현물은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

03

재창업 지원사업 신청

신청방법

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(<http://hope.sbiz.or.kr>) 신청·접수



신청기간

2023년 3월 중 소상공인 모집공고 예정



04

재창업 사업화 주관기관

전담기관
(소진공)

주관기관
(공모선발)



역할

전담기관
(소진공)

- 재창업 사업화 총괄
- 사업계획 수립·조정, 사업통합 공고 등
- 외부평가위원 및 전담멘토 pool 확보 및 관리
- 성과·사업관리(주관기관 선정 및 진도관리, 소상공인 만족도 조사 등)

주관기관

- 재창업 사업화 소상공인 모집 및 발굴, 선발
- 재창업 사업화교육 커리큘럼 수립 및 운영
- 소상공인별 컨설팅·멘토링 운영
- 자금지급 신청내역 검토, 자부담 관리, 사업비 정산
-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

주관기관 관리

PM 1인, 전담인력 2인 총 3인 이상 구성



'23년 변경사항

구분	2022년	2023년
사업화업종	e커머스, 혁신분야(업종제한x)	e커머스, 디저트·카페, 뷰티서비스, 외식업
인큐베이팅	e커머스 한정	쏘 인큐베이팅
e커머스	기존 아이템의 e커머스입점 및 마케팅지원 중심 (집행주체 : 주관기관)	e커머스용 사업화(제품개발 등) 중심 (집행주체 : 소상공인)
협약기간	재협약 불가	우수기관 차년도 재협약 가능

04

재창업 사업화 주관기관

주관기관 자격



사업자등록증에 해당분야의 교육서비스 컨설팅이 포함되어며 해당분야 교육, 컨설팅, 사업화 실적을 보유한 곳

주관기관 성격



- 간접보조사업자
- 업무편람 준용, 필요시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 등 조치
- 보조금관리법, 국가계약법, 청탁금지법 등 준용
- 이윤창출 불가,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유의
- e나라도움 사용을 통한 보조금 흐름 상시 모니터링

사업비 편성(안)

(예) e커머스(100명) 7억 이내 / 그 외 업종(100명) 8억 이내

사업구분		기준
공통 프로그램비	교육(20H)	강사비, 교육장임차료, 교재비, 다과 및 식대 등
	멘토링	멘토링 수당
	기타	선정평가(평가수당, 평가장 임차료, 다과 및 식대 등), e커머스 입점비용
인건비·기타운영비		총 사업비의 30% 이내(인건비, 홍보비 등)



04

재창업 사업화 주관기관

향후일정
문의처



향후일정



- 2023년 1월17일(화) 14:00~17:00 : 2차설명회(대면설명회, 대전),
유튜브 실시간 송출
- 2023년 1월17일(화) : 주관기관 모집공고

문의처



- 재기지원실 사업화 담당(042-363-7703~5)
- 이메일 : retake@semas.or.kr

05

재창업 교육기관

체계

전담기관이 사업총괄, 교육기관이 재창업교육 운영 및 사후관리



역할

조직	역할
전담기관 (소진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프로그램 총괄 관리 사업계획 수립·조정, 사업광고 등 교육과정 평가위원회 운영 등 사업비 관리 시스템 운용
교육기관 (35개 내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육생 모집 및 관리 현장, 온라인 교육 운영



공단은 상위보조사업자로 보조금(교육운영경비) 교부 및 관리

주관기관은 하위보조사업자로 보조금집행 및 정산 수행(국고보조금시스템 e나라도움 활용)



05

재창업 교육기관



교육기관 선정

업종 이론·실습 교육이 가능한 기관(35곳 내외)



배정물량

총 4,500건 내외(인당 100만원 내외)

'23 변경사항

구분	2022년	2023년
기관규모	총 24개	총 35개 내외 (예정)
교육과정	지방청별 교육과정 선정	교육과정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
협약기간	재협약 불가	우수기관 차년도 재협약 예정

05

재창업 교육기관

교육기관 자격

구분	자격요건
기관성격	▪재창업교육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공공·민간 협·단체
관련실적	▪3년 이내 재창업 관련 교육 실적
교육공간	▪교육운영에 충분한 공간확보(20명 이상 교육가능)
업력요건	▪공고일 기준 사업자 업력 1년 이상
인력요건	▪사업운영 전반에 필요한 전담인력 확보(상근강사 2인 이상)

교육기관 성격



- 간접보조사업자
- 업무편람 준용, 필요시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 등 조치
- 보조금관리법, 국가계약법, 청탁금지법 등 준용
- 이윤창출 불가,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유의
- e나라도움 사용을 통한 보조금 흐름 상시 모니터링

사업비 편성(안)



(인당 사업비) 100만원 이내



05

재창업 교육기관

향후일정
문의처

향후일정



- 2023년 1월17일(화) 14:00~17:00 : 2차설명회(대면설명회, 대전),
유튜브 실시간 송출
- 2023년 1월17일(화) : 교육기관 모집공고

문의처



- 재기지원실 교육 담당(042-363-7706~9)
- 이메일 : : hanjy@semas.or.kr





05

2023년 재취업 지원사업

01

재취업 지원사업 개요

신청자격

폐업(예정) 소상공인



-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자
 -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이 '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
 -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 - 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사업체의 대표
 - 전직기초·심화·특화 교육 경우, 만69세 이하까지 지원(해당 소상공인 배우자까지 지원)
- *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로 한정

지원규모

총 19,400건 내외(취업교육 10,400건+전직장려수당 9,000건)



지원내용

폐업(예정) 소상공인 취업 역량강화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

취업교육	지원 세부사항
전직기초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방식 : e-러닝을 통한 취업기초교육 • 지원내용 : 직무·직능 탐색 및 이력서·면접노하우, 취업성공사례 등 교육
전직심화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방식 : 대면 형태의 교육으로 전직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지원 • 지원내용 : 취업마인드 함양, 1:1 직업상담, 모의면접실습, 적성검사 등 교육
전직특화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방식 :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 등 • 지원내용 : 취업을 위한 기업차별 인재양성·직무특화 이론 및 실습교육

(취업교육 지원체계) 전직기초교육(연1회) → 전직심화교육(연1회) → 전직특화교육(연1회)로 참여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3회 참여가능

02

전직장려수당



지원대상



-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
- 구직활동
 - ① 전직기초교육 수수료 → 전직심화교육 수수료
 - ② 전직기초교육 수수료 → 구직활동인정사업** 참여
 - ③ 사업정리컨설팅 수수료 → 구직활동인정사업** 참여
- 구직활동인정사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노사발전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

신청기간



- 희망리턴패키지(전직기초교육·컨설팅) 수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
 - ① (구직활동) 구직활동을 포함하여 희망리턴패키지 수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
 - ② (취업완료) 희망리턴패키지 수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 →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→ 1개월 이내 신청(총 14개월 이내)

02

전직장려수당

지급기준



구분	지급 기준		지급액
공통	소상공업 폐업(필수)		
분할 지급	1차(구직활동) ①,②,③ 중 택 1	①취업교육(전직기초교육+전직심화교육) 수수료 ②취업교육(전직기초교육) 수수료+구직활동인정사업 (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) ③사업정리컨설팅(재기전략·세무·부동산·직무/직능·심리)수수료+구직활동인정사업 (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)	40만원
	2차(취업완료) ④,⑤ 전체준용	④희망리턴패키지(전직기초교육, 사업정리컨설팅) 수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⑤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(근속) 기간이 30일 이상	60만원
일괄 지급	(취업완료) ①,②,③전체준용	①희망리턴패키지(취업교육(전직기초교육)·사업정리컨설팅) 수수료 ②희망리턴패키지 수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(근속) 기간이 30일 이상	100만원

02

전직장려수당

신청방법

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(<http://hope.sbiz.or.kr>) 신청·접수



신청유의사항

- 전직기초교육 : 수료일을 기준으로 전직장려수당 신청가능 기간 확정
- 전직심화교육 : 전직기초교육 수료자에 한해 전직심화교육 신청 가능
- 전직특화교육 : 전직기초교육 수료자에 한해 전직특화교육 신청 가능
- 전직장려수당 :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본인에 한해 수당 지급 (배우자 지원 제외)



02

전직장려수당

신청서류



구분	추가서류	비고
공통서류	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·제공 동의서 ③ (소상공인/폐업예정자) 사업자등록증명원/(기폐업자) 폐업사실증명원 *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(개업일~탈퇴일 확인)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(매출액·상시근로자확인서류)	①,②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,④ 행정정보공동망 동의시, 제출 생략 가능
취업교육	① (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) 주민등록등본 : *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배우자 취업교육 참여동의서	배우자 참여시
전직특화교육	① 채용기업 지원서 (교육과정별 상이) ② 자기기술서 등 (교육과정별 상이)	2023년 중 별도 공고
전직장려수당	① 본인명의 통장사본(공통) ② 구직활동 증빙서류(구직활동시 제출) 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(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) 또는 *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 필수 - 노사발전재단 교육 수료증(노사발전재단 교육 참여시) ③ 취업완료 증빙서류(취업완료시 제출) : 1)근로계약서 2)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	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(total.kcomwel.or.kr)

03

재취업 교육기관



교육기관 체계

전담기관이 사업총괄, 교육기관이 취업심화교육·상담 운영



교육기관 역할

조직	역할
전담기관 (소진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프로그램 총괄 관리 사업계획 수립·조정, 사업공고 등 사업비 관리 시스템 운용
교육기관 (3개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육생 모집 및 관리 현장 특화 취업교육과정 개발 및 전국 단위 교육운영 (월 10회 내외) 1:1 취업상담 운영, 취업상담 전문가pool 확보 및 관리 교육 수료생 대상 수당지급 및 사후관리 (취업률, 우수사례발굴 등)

공단은 상위보조사업자로 보조금(교육운영경비) 교부 및 관리

교육기관은 하위보조사업자로 보조금집행 및 정산 수행(국고보조금시스템 e나라도움 활용)

03

재취업 교육기관



교육기관 선정

전국 규모 월별 대면교육 및 취업상담이 가능한 기관



배정물량

총 3,500건 내외(인당 100만원 내외)



'23년 변경사항

구분	2022년	2023년
수행역할	취업 현장교육 운영(10H)	취업 현장교육(10H)·직업상담(1:1)·취업코칭(면접 등)·취업연계 집중운영
기관규모	총 15개	총 3개 이내
협약기간	재협약 불가	우수기관 차년도 재협약 가능 (평가지표 별도 공지)

03

재취업 교육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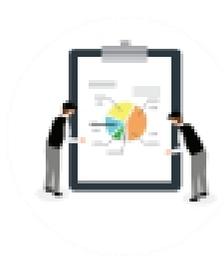


교육기관 자격

구분	자격요건
기관성격	▪ 취업교육·상담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공공·민간 협·단체
관련실적	▪ 3년 이내 취업 관련 교육 실적
교육·상담공간	▪ 교육·상담운영 공간 확보(사무공간 기준, 33㎡ 이상)
인력요건	▪ 사업운영 전반에 필요한 전담인력 확보(상근강사 보유)
업력요건	▪ 공고일 기준 사업자 업력 1년 이상

교육기관 성격

- 간접보조사업자
- 업무편람 준용, 해당시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 등 조치
- 보조금관리법, 국가계약법, 청탁금지법 등 준용
- 이윤창출 불가,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유의
- e나라도움 사용을 통한 보조금 흐름 상시 모니터링



사업비 편성(안)

(인당 사업비) 100만원 이내



03

재취업 교육기관

향후일정
문의처



향후일정



- 2023년 1월17일(화) 14:00~17:00 : 2차설명회(대면설명회, 대전),
유튜브 실시간 송출
- 2023년 1월17일(화) : 주관기관 모집공고

문의처



- 재기지원실 취업 담당(042-363-7706~9)
- 이메일 : hanjy@semas.or.kr